

1. 개정이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특허심사 인력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고, 특허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5급 정원 80명을 4급 또는 5급 35명 및 6급 45명으로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8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38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특허심사기획과와 특허심사제도과의 명칭을 각각 특허심사총괄과와 특허제도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제8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를 삭제한다.

13.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제12조제2항 중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를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사기획과장”을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사제도과장”을 “특허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을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국제출원 및 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심사제도”를 “제도”로

한다.

제12조의2제8항 중 “3D 프린팅, 금속성형 시스템 및 플라스틱”을 “디지털트윈, 3D 프린팅 및 스마트”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4”를 “172”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83”을 “800”으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55”를 “400”으로 한다.

별표 2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5”를 “1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9”를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39”를 “794”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55”를 “400”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제7호 중 “특허심사기획과장”을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특허심사기획과장”을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별표 2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2의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별표 4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5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 9. 삭 제 <u>10.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 성에 관한 사항</u> 11. (생 략) 12. 삭 제 <u><신 설></u> 13. (생 략)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삭 제 <u>7.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의 수립 · 추진</u> 8. (생 략) <u><신 설></u> 9. (생 략)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현행과 같음) <u>13.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의 수립 · 추진</u>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현행과 같음) <u>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⑤ -----

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⑥ (생략)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

9. · 10. 삭제

11. (생략)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생략)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

-----.

1. ~ 12. (현행과 같음)

13.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11. (현행과 같음)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라스틱 가공 분야의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
사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
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
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삭 제
7.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분
장하는 사항: 특허심사기획과
장
8. 삭 제
9. ~ 12. (생 략)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
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7. -----
----- 특허심사총괄과
장
9. ~ 12.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134</u>	· · <u>172</u>	+38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83</u>	<u>800</u>	-83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355</u> · ·	<u>400</u> · ·	+45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5</u>	<u>14</u>	-1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9</u>	<u>40</u>	+1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 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39</u>	<u>794</u>	-45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355</u> · ·	<u>400</u> · ·	+45
--	-------------------------------------	-------------------------------------	------------